

대전교육 2022-14

체육예술건강과

(2022. 2. 25.)

한국 교육의 중심 \* 미래 교육의 중심 \* 행복 교육의 중심  
EduCore Daejeon

2022학년도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건 | 강 | 분 | 야 |



**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건강분야 정책추진 과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 □ 학생건강증진

-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학교 보건관리
  - 소아당뇨(제1형) 학생지원·관리 강화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지원

### □ 학생건강검사

- 학생건강검사 철저
- 건강검진 실시요령
- 학생 별도검사 실시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학생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증진 효과 창출



## 기 본 방 향

- ❖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직원의 지도 아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므로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
-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줌
-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바른 생활 태도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 2022년도 건강분야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 고
I-1.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P.4)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추가>	(P.4)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보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코로나19의 경우 자체 보고형식으로 같음(별도안내 예정)	
	(P.6) <추가>	(P.6) ○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학생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현황 점검 및 운영	
I-2. 학교보건관리	다. 여학생 생리현상에 대한 여성용품 확보 지원 ○ 보건실 이용 시 필요학생에 대한 배려조치 - 보건실에 여성용품(생리대 등)을 비치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생리대 자판기 및 생리대 함 등을 설치하여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필요학생에 대한 배려 조치 - 학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제공 ※ (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7조	<변경>

구 분	2021년도 주요내용	2022년도 변경내용	비 고
II. 학생건강검사	(P.18) 2. 학생건강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방법 ○ 검진기관 선정 ※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추가>	(P.18) 2. 학생건강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방법 ○ 검진기관 선정 ※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세부승인절차 포함	
	(P.25) II-4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추가>	(P.25) II-4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표본조사 대상학교(47교) [2021~2023년 운영]	
	(P.28~29)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추가>	(P.28~29)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 내용추가	
	(P.70) <추가>	(P.70) [참고자료2-1] (서식추가) 학생건강검진기관 출장 검진 승인 요청서	



<b>I. 학생건강증진</b> .....	<b>1</b>
1.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3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서식) .....	7
2. 학교 보건관리 .....	9
<b>II. 2022년도 학생건강검사 실시 기준</b> .....	<b>11</b>
1. 학생건강검사 철저 .....	14
2. 건강검진 실시요령 .....	17
3. 학생 별도검사 실시 .....	24
4.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25
• <붙임> 별표, 각종서식 .....	26
<b>III. 보고 사항</b> .....	<b>54</b>
1. 보고 목록 .....	56
2. 보고 서식 .....	57
<b>IV. 참고 자료</b> .....	<b>66</b>
1.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	67
2.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 요청서 .....	69
2-1 학생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요청서 .....	70
3. 학교건강검사 규칙 .....	71
4.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77
5.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85
6.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	94
7.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	95
8. 학생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	96
9.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97
10.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	98
11. 등교중지 관련 법령 .....	99
12.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기안문 .....	100



# I . 학생건강증진

Ⅰ 건강분야 Ⅰ

1.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서식)
2. 학교보건관리
  - 소아당뇨(제1형) 학생지원 · 관리 강화



## 1. 기본방침

- 가.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

## 2. 현 황

- 가.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정보공유 등 예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확보
  - 「학생감염병 예방 세부대책」 수립('16~'20)

### 나. 학생 감염병관리 체계 정비 및 자료 개발·보급

- 초·중·고·특수학교용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학생 빈발 감염병예방을 위한 학생용 교육자료, 학부모 홍보 리플릿 자료 개발·보급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국어 번역본 포함)

### 다.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원격연수 과정 운영

## 3. 추진방향

###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강화
  - 예방교육 시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교육 자료 적극 활용
-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추진
  - 학교관리자,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대상 원격연수 과정 운영

- 학생들이 참여하는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 감염병에 대한 관심도 및 실천율 제고를 위해 학교별 자율 프로그램 추진
    - 감염병 교육 자료 및 보건소식지 등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
    - 보건소식지에 흥미 유발을 위한 감염병 퀴즈, 십자말풀이 게시
    - ‘보건의 날’을 지정하여 손씻기 등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에 대한 정보,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문, SNS를 통해 적극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 보급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 나. 학교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 1. 1.)
  -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강화
  - 학교 「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을 통해 구성원별 감염병 대응 철저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즉시 등교중지 후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안내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보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 코로나19의 경우 자체 보고형식으로 같음(별도안내 예정)
  - 교육(지원)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전송(학교→교육청→교육부)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내 결핵 발생 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여부를 확인
- 보건당국 협력 체계 구축 및 유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육청-보건소-학교 간 hot-line 구축 및 유지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보건당국 역학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

####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 나이스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개선 추진 중('21.하반기~)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 라.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및 지역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 「학생 감염병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 수립 예정
  - 우선은 기존 1차 종합대책을 준용해서 추진
- 학교·보건소·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현황 점검 및 운영
-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위생용품 구비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역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연수 추진



##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1. 00. 00( ), 00교육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1.1.10	결핵	1	학생	2-1(1)	'21.1.3	'21.1.3	'21.1.25
'21.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1.1.3 / '21.1.11	'21.1.11	미정
'21.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21.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1.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21.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21.1.3 / '21.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환자의 형제 자매
'21.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 1. 기본방침

- 가.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나. 효율적인 보건실의 설치와 기저질환자 학생 파악 등을 통한 학생 건강관리 지원

## 2. 현황

- 가. 소아당뇨[제1형] 학생 응급처치 제공 및 가이드라인 보급
  -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18.5.29 시행)
  -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2019.9.23.)]
- 나.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민감군) 관리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등) 학생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21.8.) p.23)

## 3. 추진방향

- 가. 소아당뇨[제1형] 학생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수만을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철저

-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보건실 등의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나. 미세먼지가 '나쁨'인 경우 민감군 학생에 대한 조치 철저

- 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알림
  -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의사소견서 등) 제출 안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유아학비 지원 계획(교육부지침)에 근거

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필요학생에 대한 배려 조치
  - 학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 보관함(무료자판기 등)을 화장실 등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제공

※ (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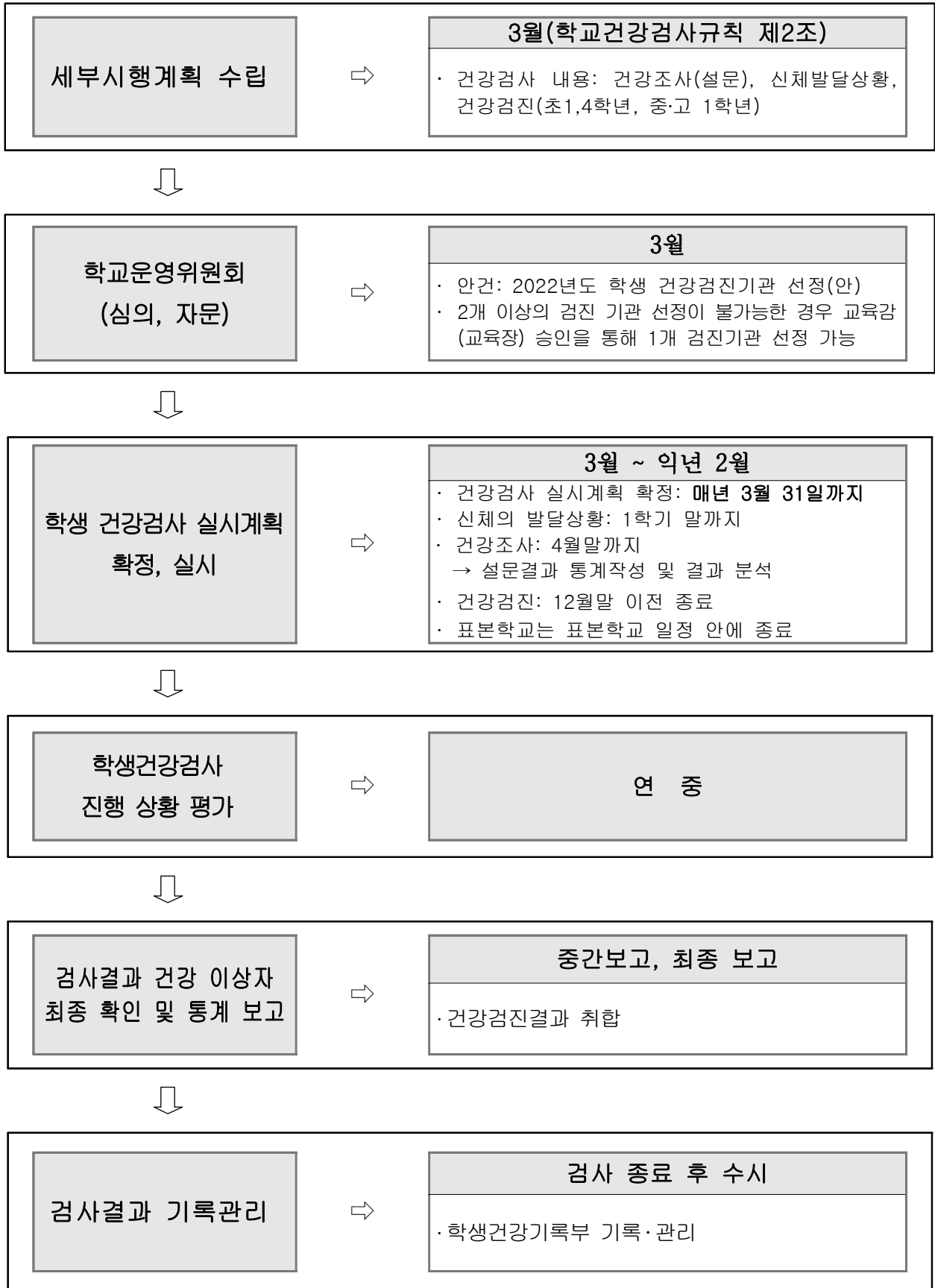
## Ⅱ. 학생건강검사 실시 기준

Ⅰ 건강분야 Ⅰ

1. 학생건강검사 철저
2. 건강검진 실시 요령
  - 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 학생건강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3. 학생 별도검사 실시



## 학생건강검사 실시 절차



### 1. 기본방침

- 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2. 현 황

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별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나.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제한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 3. 추진방향

####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 철저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3.)에 따라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개정 시행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기존 2021~2023년 해당 표본학교는 기존 보고체계 추진

#### 나.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 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다.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 강구
- 학생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점검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지역 내에서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주의 요망

## II-2 건강검진 실시요령

### 1.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 가. 검사항목 및 대상(규칙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학생 건강 검사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문진표를 통해 조사
	건강검진	척추, 눈·귀·코·목·피부 구강(초등 전체학년) 병리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실시
별도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시력검사

#### 나. 학년별 시행 내용

구 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병리검사 등	-	-	결핵검사	결핵검사 빈혈검사(여학생)
기본검진항목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건강조사	척추, 눈·귀·코·목·피부, 구강검사, 소변검사, 혈압, 허리둘레(비만학생)			
건강검진	식생활 습관, 수면 및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및 건강 상담 요구			

※ 허리둘레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비만학생에 대하여 측정

#### 다. 검사항목별 내역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특수학교·각종학교 포함)	비고
신 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 학교자체	키, 몸무게, 비만도 · <붙임> [별표2]	건강기록부등재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건강조사	초1,4/중1/고1	검진기관, 학교자체	문진표에 의한 조사 · <붙임> [별표 7, 8]	문진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설문지에 의한 조사 · <붙임> [별표 4, 5, 6]	설문
건강검진	초1,4/중1/고1	검진기관	일반, 구강검진 · <붙임> [별표 1~12]	
	초2~3, 5~6	검진기관	구강검진 문진표 · <붙임> [별표 9]	

## 2. 학생건강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 가. 건강조사

- 설문지를 학교자체에서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 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 조사결과 처리
  - 1학기 전까지 설문결과 통계작성 및 결과 분석 후 학교 보건관리에 반영

### 나. 신체발달 상황

- 키, 몸무게에 대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의 방법은 「학생 건강검사규칙」 별표 1에 따라 실시
- 조사결과는 매학년도 1학기 전에 실시하여 교육(지원)청 보고(자료 집계시스템)

### 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방법

- 검사대상자인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기관 선정
  - 대상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일반 및 구강검진)
  - 검진기관수: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절차】

-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4항제3호 ※ 2021년~2022년 코로나19 상황 고려
- (절차) 학교장이 ‘1개 검진기관 선정[참고자료2] 및 출장검진[참고자료2-1] 승인 요청서’를 2022.3.25.(금)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 교육감(교육장)이 승인
  - ※ 초·중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고·각종 ⇒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감(장)의 승인 없이 1개 검진기관 선정 및 출장검진 가능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학교가 소재한 지역 내(동)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관 수 만큼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 분		사례1	사례 2	사례 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과		1개	2개

※ 위 표상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로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 사례 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필요 없음
- ▶ 사례 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 ▶ 사례 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하여야 함.

- **검진기관 선정방법:**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검진기관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검진준비, 검진항목 및 검진비용부담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이행 등 명기
  -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학생건강검진 승낙서」를 계약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참고자료 1(67쪽)]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여부 확인

※ 건강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http://nhis.or.kr>)→건강iN→검진기관 정보→검진기관 찾기→주소 (대전광역시, 행정구, 동(도로명) 선택)

- **검진비용[별표 10] ※ 전액 학교회계부담(학교운영비에 포함)**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 **건강검진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 ○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한다.
- 구강검진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2022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방법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학년은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 ※ 별도검사(구강) 실시 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구강검진에서 실시하되, 시기는 학교 일정에 따라 실시
- 구강검진비용
  - 초1,4학년 및 중·고 1학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 초2,3,5,6학년 : 학생 1인당 6,500원(출장 및 내원검진이 가능하나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가급적 내원검진 실시)
    - ※ 검진기관 준수사항: 출장검진 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함
- 구강검사를 검진기관에서 할 경우
  - 지정된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서 실시
  - 검진기관에 상근 치과의사가 없어 별도로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검진기관과 별도로 구강검진기관과도 계약 체결

###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의료법 위반)】

-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인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구강검진기관인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와 계약을 하여 고용할 수 없음.

## ○ 건강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학생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년도 시작 시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 전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학생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학년도 시작 시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 ○ 검사 및 판독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으로 정한 검사방법에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외의 검사 및 판독은 당해 검진기관의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에 의하여 실시

## ○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판정결과 기재

### - 일반사항

- 검진기관(구강검사기관 포함)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서식1(50쪽)】 및 별지 제1호의 6 서식(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서식2(52쪽)】 에 의거 검사결과 기록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담당의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이 검진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에는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 검진기관은 건강검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종합소견, 판정의사, 검진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 판정

- 건강검진의 종합소견은 진찰(문진 포함), 체위검사 및 각종 검사성과 검사항목별 판정결과를 참고하여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건강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 5서식에 의한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한 학생 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통보한다.

※ 통보서식은 뒷면의 별도검사 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시 결과통보서를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상이한 내역으로 검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진결과 내역을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에 관계없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확인 한 결과 건강 이상 및 요정밀검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의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진 여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등 해당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활동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한다.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에 의거 관리하며,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관리한다(학교에서 보관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관리)

○ **검진비용의 청구 및 심사 지급**

- **청 구**
  -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 【별표 10(47쪽)】 에 의한다.
    - ※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외 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금은 미지급
  -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비용청구 요령**
  - 자체 구강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경우 구강검진을 포함한 비용을 청구한다.
  - 자체 구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구강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구강검진 계약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 검진비용청구서 접수 및 심사

-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 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보완 또는 정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12(49쪽)】에 따라 조치하고 당해 검진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검진비용 지급

-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학교 및 검진기관의 유의사항

☞ [별표 1] 28쪽을 필독하여 건강검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1.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별도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학교 자체 또는 검진기관과 일정 협의 후 시행

### 2. 실시내용

검사 항목	대상 학년	검사자 및 기관	검사방법	검사비 (학교회계)	비고
소변	초 23,5,6 중·고 23	국민건강보험법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 이용, 신선한 요 채취 후 시험지 사용 측정 (요단백, 요잠혈)	1인당 760원	3~11월
시력	초 23,5,6 중·고 23	교직원 (교의의 자문을 받아)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 시력을 검사	없음	"
결핵	고 23	결핵협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	· 흉부X-선촬영 및 판독	1인당 3,400원	"

### 3. 검사결과 관리

- 가. 별도검사 결과 건강이상 및 요정밀 검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의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교육이나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 나.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에 의거 관리하며,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관리한다(학교에서 보관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념하여 관리)

### 4. 기타사항

- 가. 검사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안내 및 사전, 사후 보건교육 실시
- 나. 유증상 학생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관리 지도(특히 결핵 관리 철저)

## II-4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 ◎ 표본조사 대상학교(47교) [2021~2023년 운영]

※ 표본학교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661(2021.2.24.)호로 선정·통보

⇒ 2021년~2023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명단 안내[체육예술건강과-1947(2021.2.26.)]

\* 2021년~2023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체육예술건강과-3296(2021.3.23.)]

번호	초등학교	번호	중학교	번호	고등학교
1	대전배울초등학교	1	대전문지중학교	1	대전용산고등학교
2	대전송림초등학교	2	대전노은중학교	2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3	대전봉명초등학교	3	대덕중학교	3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
4	진잠초등학교	4	신탄진중학교	4	대전과학고등학교
5	동명초등학교	5	대전매봉중학교	5	유성고등학교
6	대전성남초등학교	6	대전용전중학교	6	대전이문고등학교
7	대전천동초등학교	7	대전가양중학교	7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8	대전대흥초등학교	8	한밭여자중학교	8	우송고등학교
9	대전석교초등학교	9	대전중앙중학교	9	대전중앙고등학교
10	대전성룡초등학교	10	청란여자중학교	10	대전대성고등학교
11	대전내동초등학교	11	대전둔산중학교	11	호수돈여자고등학교
12	대전도솔초등학교	12	대전문정중학교	12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13	대전복수초등학교	13	대전둔원중학교	13	청란여자고등학교
		14	대전도마중학교	14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15	대전관저중학교	15	대전둔원고등학교
		16	가수원중학교	16	대전괴정고등학교
				17	대전관저고등학교
				18	대전복수고등학교

# < 붙 임 >

## ■ 별 표

1. 학교 및 검진기관 유의사항 .....	28
2.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 .....	31
2-1 연령별 신장도표 .....	32
2-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	33
3.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34
3-1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	35
3-2 성별·연령별 정상 총 콜레스테롤 참고치 .....	37
4.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38
5. 건강조사 설문지(중학생용) .....	40
6. 건강조사 설문지(고등학생용) .....	42
7. 건강검진 문진표(초등학생용) .....	44
8. 건강검진 문진표(중·고등학생용) .....	45
9. 구강검진 문진표 .....	46
10.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	47
11. 건강검진 수수료 .....	48
12. 검진비용 정산기준 .....	49

## ■ 서 식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	50
2.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	52



## 학교 및 검진기관의 유의사항

### □ 학교장 조치사항

- 학교장은 검진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 안전사고 예방 등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검진기관을 선정
- 검진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 및 보건교육 실시
- 학교 출장검진 시 지도·담당교사 임장지도 철저
- 검진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문진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검진기관의 문진표를 학생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학부모와 함께 작성하게 하고, 검진 당일 의사에게 제출토록 조치 및 지도
- 검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운동 삼가, 당일 체육시간 운동량은 체육교사와 상의 결정
-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통보서 내용을 확인 하고, 일괄처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 통신문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 담임교사에게 결과를 알려 수업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며,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이 연계하여 건강지도 철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의 정밀검진 시 2차 검진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진비는 학부모가 부담함을 안내
  - 2차 검진결과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상담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지도 등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 건강검진은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연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학교 건강검진 제도 홍보를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사항 발생 방지(예: 검진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전 예약제,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 강구)

- 검진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
  - 문진표(구강검진 포함), 건강검사결과통보서(구강검진 포함), 검진안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 여부 확인
-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예 :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구강)검사결과통보서 외의 기타 자료 및 별도검사 검진 기관에 “신체발달상황” 검사를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건강검진 실시 안내
  - 학교장은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비롯한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안내)을 실시하되, 특히 종전과 달라진 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홍보한다.
  - 학교장은 실효성이 있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실시
    - 2006년도부터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 검진대상자가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검진기관에 사전예약(예약 전화번호 안내) 후 방문해야 편의성이 있다는 내용
    -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 당일에 공복을 유지(건강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한 상태로 건강검진에 임하도록 하여, 검진기관을 재방문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 검진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문진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학부모와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 지정 검진기관의 명단
    - 기타 건강검진절차 및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 □ 검진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일정, 검진팀 구성, 검진항목별 담당의사 등 검진 요원 지정 및 검진장소 준비 등
- 검진기관은 문진표 **【별표 7, 8】**, 구강검진문진표 **【별표 9】**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 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보건교육 실시
-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구강검진 포함) 제출 등 검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
-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 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의 검진행위 금지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별표1」, 「별표4」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검진기관은 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 (검진 외 불필요한 행위 금지 및 검진 진행요원 상시 배치 등)
- 검진기관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등의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



[별표 2]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kg/m <sup>2</sup> )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교: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2-1]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별표2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 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궁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별표 3]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액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3-1]

## 연령 · 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sup>1)</sup>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별표 3-2]

성별 · 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단위: 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4]

##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학 교 명		학 교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 년 월 일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1)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 아니오(        ) 2)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① 일본뇌염 ② 인플루엔자 ③ 기타(        ) ④ 모름								
	나.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부	모	형제	조부	조모	외 조부	외 조모	기타 (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								
	다. 개인병력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기타질환(        )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 안먹음	② 매일먹음	③ 1-2번	④ 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2. 식생활/ 비만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2. 식생활/ 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 만	평소 체중관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예	아니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하루에 이를 몇 번 닦습니까? ① 하루 1회 ② 하루 2회 ③ 하루 3회 이상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몇 번 합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1~2회 ③ 주3~5회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5시간 이하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평소 자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봅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친구가 언어적, 신체적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술을 마셔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함께 사는 가족 중에 흡연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li> <li>○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li> </ul>		

[별표 5]

## 건강조사 설문지(중학생용)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1)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① 일본뇌염 ② 인플루엔자 ③ 기타(                                    ) ④ 모름									
	나.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부	모	형제	조부	조모	외 조부	외 조모	기타 (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										
	다. 개인병력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질환(                                    )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 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1~2회 ③ 주3~5회	
	비 만	체중조절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 먹기 전, 외출 후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하루에 이를 몇 번 닦습니까? ① 하루 1회 ② 하루 2회 ③ 하루 3회 이상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5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포르노, 야한 잡지, 야한 영화 등)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에 3회 이상 ④ 한달에 3~4번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매며, 보행 시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주변에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거나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임법 또는 성과 관련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임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낙태시킨다. ② 입양시킨다. ③ 어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나의 장점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고, 내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최근 스트레스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학교성적과 학습량의 과중(학원, 과외수업, 숙제 등) ② 외모(얼굴, 몸무게, 키 등) ③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 ④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li> <li>○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li> </ul>		

[별표 6]

## 건강조사 설문지(고등학생용)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감염병 예방접종	1)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 아니오(     ) 2)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① 일본뇌염 ② 인플루엔자 ③ 기타(                                     ) ④ 모름								
	나.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부	모	형제	조부	조모	외	외	기타 (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									
	다. 개인병력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 질환(                     )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o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 안먹음	② 매일먹음	③ 1-2번	④ 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 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만	체중조절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하루에 이를 몇 번 닦습니까? ① 하루 1회 ② 하루 2회 ③ 하루 3회 이상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5시간 이하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포르노, 야한 잡지, 야한 영화 등)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에 3회 이상 ④ 한달에 3~4번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매며, 보행 시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주변에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거나 돈을 뺏긴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흡연/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임법 또는 성과 관련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임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낙태시킨다. ② 입양시킨다. ③ 어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나의 장점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고, 내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최근 스트레스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학교성적과 학습량의 과중(학원, 과외수업, 숙제 등) ② 외모(얼굴, 몸무게, 키 등) ③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 ④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12. 건강상담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 기타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주시고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별표 7]

##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예 □아니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예 □아니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예 □아니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예 □아니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예 □아니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별표 8]

## 문진표(중학생 · 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
|---|---------|
|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br>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에 □아니오 |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br>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에 □아니오 |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br>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에 □아니오 |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br>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에 □아니오 |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br>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에 □아니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썹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혈액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그 밖의 증상	몸에 멍이 잘 든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을 잘 벌여지지 않는다.		
	목 · 허리 · 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 구강검진 문진표

<p>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u>최근 1년 동안</u>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3. 치아가 쭈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u>치과의사 선생님</u> 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 2022년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항 목	초 1	초 4		중 1		고 1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남		여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 허리둘레(비만학생)측정 포함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8,84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7,830		
병 리 검 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760	760	760	760	760	760	760	760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HDL, LDL(계산값), 중성지방]			16,640		16,640		16,640		16,640	
	여학생(고1): 혈색소								1,030	1,030	
	결 핵 (촬영 및 판독료 +재료대)	직촬(14" X14" )				8,150	8,150	8,150	8,150	8,150	8,150
		직촬(14" X17" )				8,460	8,460	8,460	8,460	8,460	8,460
		CR or DR				6,810	6,810	6,810	6,810	6,810	6,810
		Full PACS				7,720	7,720	7,720	7,720	7,720	7,720
계		17,430	17,430	34,070	24,240	40,880	24,240	40,880	25,270	41,910	
					~	~	~	~	~	~	
					25,890	42,530	25,890	42,530	26,920	43,560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 건강검진기관포털(<https://sis.nhic.or.kr>)→기관이용안내→뉴스/공지사항→202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건강iN→건강자료실→검진청구 공지사항→2022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안내(탑재 예정)

-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시 검진비용: 6,340원
  - 중성지방 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 구강 및 별도검사(소변, 결핵) 비용
  - 구강검사: 6,500원(초 2,3,5,6학년)
  - 소변검사: 760원(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 결핵검사: 3,400원(고 2,3학년)(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CR or DR 50%)

## 2022년도 학생건강검진 수수료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구분	검사항목	검 사 방 법	검사비용 (원)	검사여부			
				초		중1	고1
				1년	4년		
①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공통)	1-1. 키(cm)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요령에 의함	8,840	○	○	○	○
	1-2. 몸무게(kg)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 요령에 의함		○	○	○	○
	1-3. 비만도 측정	체질량지수(BMI)		○	○	○	○
	1-4.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허리둘레 검사		×	○	○	○
	1-5.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	○
	1-6. 시력 측정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	○	○	○
	1-7.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	○	○
	1-8. 청력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	○	○	○
	1-9.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	○	○	○
	1-10. 콧병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	○
	1-11. 목병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등 검사		○	○	○	○
	1-12.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염, 전염성 피부염 등 검사		○	○	○	○
	1-13. 혈압 측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	○
	1-14.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	○	○	○
② 구강	2-1.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검사	7,830	○	○	○	○
	2-2.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③ 병리검사 등	3-1. 소변검사	시험지법(요단백, 요잠혈)	760	○	○	○	○
	3-2. 혈액검사	3-2-1. 혈당(식전)	1,310(비만)	×	○	○	○
		3-2-2. 총콜레스테롤	1,560(비만)	×	○	○	○
		3-2-3. AST(SGOT)	1,880(비만)	×	○	○	○
		3-2-4. ALT(SGPT)	1,840(비만)	×	○	○	○
		3-2-5.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6,320(비만)	×	○	○	○
		3-2-6. 중성지방	3,730(비만)	×	○	○	○
		3-2-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	×	○	○	○
		3-2-8. 혈색소(여고생)	1,030	×	×	×	○
	3-4. 결핵검사	흉부 X-선 직촬(14"X14")-촬영 및 판독료+ 재료대	8,150	×	×	○	○
		흉부 X-선 직촬(14"X17")-촬영 및 판독료+ 재료대	8,460	×	×	○	○
흉부 X-선(CR or DR)		6,810	×	×	○	○	
흉부 X-선(Full PACS)		7,720	×	×	○	○	

※ 3-2-7.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자동산출

⇒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하여 결과값 산출(실측정값 6,340원)

##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li> </ul> </li> <li>◦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등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li> <li>◦ 치면세균막검사 미실시한 경우</li> </ul>	해당항목 검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위검사 종목(키, 몸무게, 비만도) 중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li> <li>◦ 의사의 진찰 및 상담을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li> <li>◦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입력 한 경우</li> <li>◦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li> </ul>	상담 및 행정비용 전액 삭감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기준대로 실시하지 하고 검사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여고 1년생 혈색소 검사를 비만학생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li> </ul> </li> <li>◦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li> </ul>	검진비 전액 삭감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혈액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비만학생이 아닌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li> </ul> </li> <li>◦ 담당자의 착오로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li> </ul>	해당항목 검사비용전액 삭감
라. 지급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견·조치 사항 및 판정(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li> <li>◦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li> </ul>	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 보류 후 시정완료시 지급

[서식 1]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 년 / 반 / 번 호	학 년	반	번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 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측정	나 안 교 정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안 질 환		좌: 우:		
귀	청 력	좌: 우:		간 세포 효 소	AST	U/L
	귓 병				ALT	U/L
콧 병					혈 색 소	
목 병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mm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mm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검진기관명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

(뒷면)

검사일자	검 사 명	검사기관	검사 결과

※ 작성 및 관리방법

-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위 표에 기재한다.

##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총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총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①	없음	②	있음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①	없음	②	있음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일	
치과의사	의사명	(인)	검진기관	검진기관명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

(뒷면)

검사일자	검 사 명	검사기관	검사 결과

※ 작성 및 관리방법

-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위 표에 기재한다.

## Ⅲ. 보고 사항

Ⅰ 건강분야 Ⅰ

1. 보고 목록

2. 보고 서식





## 1. 보고 목록

순	보고 사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쪽수	비고
1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사안발생 즉시		6쪽	전자문서
2	난치병 및 천식 학생 현황(학교) 난치병 및 천식 학생 현황(교육청용)	2022.03.18. 2022.03.25.	서식 1-1호 서식 1-2호	57쪽	자료집계
3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2022.04.08.	서식 2호	58쪽	자료집계
4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2.05.06.	서식 3호	59쪽	자료집계
5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2022.12.16.	서식 4호	62쪽	자료집계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2022.12.16.	서식 5호	63쪽	자료집계
7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2.12.16.	서식 6호	64쪽	자료집계
8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현황	2022.09.30.			NEIS 보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건강검사 실시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보고 기한을 2022년 8월 말 ⇒ 2022년 12월 16일로 연장

### □ 보고체계

- ① 초등학교, 중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 ②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 상기 보고기한은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각종,특수포함)에서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일정임

## 2. 보고 서식

### [서식 1-1호]

## 2022년 난치병학생 현황(학교)

학교명	전체 학생수	난치병명										비고	
		심장 질환	백혈병	소아암	뇌질환	1형 당뇨	2형 당뇨	뇌전증	신장 질환	근이 양증	기타		

※ 작성요령

- 현재 치료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작성(완치 후 정기검진 학생 포함)

### [서식 1-2호]

## 2022년 난치병학생 현황(교육지원청)

기관명: OO교육지원청

급별	학교명	전체 학생수	난치병명										계
			심장 질환	백혈병	소아암	뇌질환	1형 당뇨	2형 당뇨	뇌전증	신장 질환	근이 양증	기타	
초													
소계	교	명											
중													
소계	교	명											
고													
소계	교	명											
총계	교	명											

[서식 2호]

##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

기관명 : 교육청

###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실 설치 학교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기준 <sup>1)</sup> 충족 학교수	보건실 미설치 학교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 '22. 4. 1. 기준 현황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서식 3호]

##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2.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 측정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 보관
-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 보관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2.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4호]

##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2)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검사인원 (명)	남자							
		여자							
계									

- 1)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 ※ (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



[서식 5호]

##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서식 6호]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초	1									
	4									
중	1									
고	1									
특수(기타)	1,4									
합계										

\* 검진비용 :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수 기준(전체 집행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2. 초등학교 2, 3, 5, 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2									
3									
5									
6									
합계									

3. 별도검사 실시 현황(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초	2												
	3												
	5												
	6												
중	2												
	3												
고	2												
	3												
특수 (기타)	2												
	3												

## IV. 참고 자료

Ⅰ 건강분야 Ⅰ

1.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 67
2.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요청서 / 69
- 2-1. 학생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요청서 / 70
3. 학교건강검사 규칙 / 71
4.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77
5.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85
6.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 94
7.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 95
8. 학생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 96
9. 학교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 97
10.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 98
11. 등교중지 관련 법령 / 99
12.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 기안문(안) / 100

【참고 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_____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2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초4, 중1, 고1 비만학생
검진대상	00학년 학생 _____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2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2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 자료 2】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학급수		총학생수		검진대상 학 생 수
소재지			담당자명			
			전화번호	내 선 : 핸드폰 :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승인 요청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참고 자료 2-1】

**학생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요청서**

학교명		학급수		총학생수		검진대상 학생 수	
학교 소재지			담당자명		내 선 : 핸드폰 :		
			전화번호				
출장검진 기관명			출장검진 (예약)날짜				
학생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승인 요청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참고 자료 3】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1.6.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3. 4.]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 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0. 1. 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16. 3. 4.]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16. 3. 4.>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16. 3. 4.]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부칙 <제240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관련)
- [별표1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 [별표3]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제7조제5항 관련)
- [별표4]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별표5]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별표6]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제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 [별지 제1호의4서식] 구강검진 문진표
- [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의7서식] 자기신체평가 설문지(선택평가)
- [별지 제1호의8서식] 자세평가 성문지(선택평가)
- [별지 제2호서식]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별지 제4호서식] 학생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통계표

## 【참고 자료 4】

#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1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판정결과 기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진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

② 검진 항목별 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진결과 판정) ①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검진기관의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를 참조한다.

제4조(검진결과 기재) ①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2.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0-217호, 2020. 2. 13.>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p>&lt;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li> <li>·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li> <li>·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li> <li>·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li> <li>·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li> </ul>				
2. 눈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20%;">가. 시력측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li> <li>·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li> <li>·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li> <li>·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li> <li>·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li> </u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나. 안질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li> <li>·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li> <li>·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li> <li>·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li> <li>·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li> <li>·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li> <li>·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li> <li>·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li> </ul> </td> </tr> </table>	가. 시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li> <li>·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li> <li>·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li> <li>·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li> <li>·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li> </ul>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li> <li>·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li> <li>·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li> <li>·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li> <li>·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li> <li>·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li> <li>·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li> <li>·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li> </ul>
가. 시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li> <li>·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li> <li>·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li> <li>·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li> <li>·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li> </ul>				
나. 안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li> <li>·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li> <li>·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li> <li>·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li> <li>·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li> <li>·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li> <li>·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li> <li>·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li> </ul>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3. 귀	가. 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li> <li>·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li> </ul>
	나. 귓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li> <li>·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li> </ul>
4. 콧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li> <li>·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li> </ul>	
5. 목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li> <li>·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li> <li>·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li> </ul>	
6. 피부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li> <li>·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li> <li>·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li> <li>·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li> <li>·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li> </ul>	
7. 구강	가. 치아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li> <li>·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li> <li>·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li> </ul>
	나. 구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li> </ul>
8. 병리검사등	가. 소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li> <li>·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li> <li>·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li> </ul>

검사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나. 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li> <li>- 고1 여학생 : 혈액소</li> </ul> </li> <li>·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li> <li>·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li> </ul>
	다.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li> </ul>
	라. 혈 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li> <li>·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li> <li>·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li> <li>·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li> <li>·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li> <li>·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li> <li>·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li> <li>·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li> </ul>
9. 허리둘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li> <li>·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li> </ul>	
10. 그 밖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li> </ul>	

[별표 2]

##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li> <li>-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li> </ul>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동시 양성인 경우도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막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이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 · "진찰" · "상담" ·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진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참고 자료 5】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2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학생건강기록부와 건강검사통계의 전산처리 및 관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자료"라 함은 학생건강기록부 및 관련 보조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 기억매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각급학교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보건 교사, 담임교사, 체육담당교사, 학교보건담당교사 등)를 말한다.
4. "원적교"라 함은 학생이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이하 '재·전·편입학'이라 한다)한 학교의 이전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산입력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 등으로 한다.
- ③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장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 ④ 학생이 재·전·편입학할 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전·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하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4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신체의 능력검사와 관련된 전산매체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 항목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학생건강기록부 서식은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m<sup>2</sup>, 용지규격 210×297mm : A4)이 되며, 학생개인별 2쪽 분량 단면인쇄로 한다.

## 제2장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요령

제6조(인적사항)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1쪽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학생의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2. 학생의 성별은 "남" 또는 "여"로, 주민등록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3.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에 준하여 입력하며, 학년도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당해 학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감염병예방접종)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1쪽의 '감염병예방접종'은 표준예방접종지침(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의한 소아표준예방접종 대상감염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취학전 예방접종'란에는 초등학교의 장이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간염 등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접종"으로 입력하고,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접종"으로 입력하며, 비고란에는 접종금기여 여부를 기재(선택을 통한 자동입력기능 내장)한다.
2. '취학후 예방접종'란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학년'란에는 "초"."중"."고" 및 "1년"."2년"."3년" 등으로, '대상감염병'란에는 "감염병명"을 한글로, '접종일'은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예 : 초/3년, 일본뇌염, 1999. 05. 17)로 입력한다.

제8조(신체의 발달상황)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2쪽 '신체의 발달상황'란의 '키·몸무게'는 아라비아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다.

- ② '비만도'란은 입력한 키와 몸무게를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타난다. 산출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정한 표준성장곡선'에 대비하여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에는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에는 "저체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으로 판정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비만도 자동산출기능 내장).

<비만도 체질량지수 산출의 기본공식>

$$\text{체질량지수 (kg/m}^2\text{)} = \text{실측체중 (kg)} / \text{신장 (m)}^2$$

제9조(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현황)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제2쪽의 '건강검진 현황' 중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검진일'은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검진기관'은 한글로 입력한다.

- ②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도검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검사일자'란에는 "연·월·일"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2. '검사명'란에는 시행한 별도검사명(소변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을 한글로 입력한다.
  3. '검사기관'란에는 별도검사를 시행한 기관명을 한글로 입력한다.



제10조(신체의 능력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체의 능력’은 각 항목별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1. ‘왕복오래달리기’란에는 실시한 횟수(첫번째 ‘△’는 측정횟수에 포함)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되, "50회"의 경우 "50"과 같이 표기한다.
2. ‘오래달리기걸기’란에는 분·초 단위(다만, 초미만의 단위가 0으로 끝나는 경우 이외에는 0.1초 단위에서 버림하여 6분2.0초는 6분2초, 6분2.1초는 6분2초를 적용)로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분6초"의 경우 "6.06"과 같이 소수점이하의 자리수는 두 자리를 갖추어 표기한다.
3. ‘스텝검사’란에는 계산된 PEI 값을 0.1점 단위(0.01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의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되, "70.5점"의 경우 "70.5"과 같이 표기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PEI 자동산출기능 내장).
4.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란에는 0.1센티미터 단위로 측정된 기록(2회 측정된 기록 중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3센티미터"의 경우 "9.3"과 같이 표기한다.
5. ‘종합유연성’란에는 측정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오른쪽 왼쪽 모두 성공하면 2점, 한 쪽만 성공하면 1점, 모두 실패하면 0점)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점"의 경우 "6"과 같이 표기한다.
6.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란에는 실시한 횟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회" 실시한 경우 "9"와 같이 표기한다.
7. ‘윗몸말아올리기’란에는 실시한 횟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회" 실시한 경우 "20"와 같이 표기한다.
8. ‘악력’란에는 0.1킬로그램 단위(0.01킬로그램 단위에서 올림하여 기록한다)로 측정된 기록(오른쪽 2회·왼쪽 2회, 총 4회 측정된 기록 중 최고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5킬로그램"의 경우 "20.5"와 같이 표기한다.
9. ‘50미터 달리기’란에는 0.01초 단위까지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23초’의 경우 "8.23"와 같이 표기한다.
10. ‘제자리멀리뛰기’란에는 0.1센티미터 단위(0.1센티미터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로 측정된 기록(2회 측정된 기록 중 높은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9.3센티미터"의 경우 "89.3"와 같이 표기한다.
11. ‘체지방률’란에는 0.1퍼센트 단위로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5 퍼센트"의 경우 "18.5"와 같이 표기한다.
12. ‘신체의 능력점수’란은 실시한 신체의 능력검사의 기록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5에 따라 산정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13. ‘신체의 능력등급’란은 ‘신체의 능력점수’를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6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 제3장 학생 건강검사 통계처리

제11조(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자동 산출기능 내장)

1.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는 연도별, 초·중·고등학교별, 남·여별로 작성하며, '기관명'에는 학교명 또는 교육청명을 입력한다.
2. '학년'란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통계자료를 입력한다.
3. '키'는 센티미터를 단위로하여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 전체의 키를 합산하여 그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한다.
4.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 전체의 몸무게를 합산하여 그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한다.
5. '비만율'은 수검자 인원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을 소수첫째자리까지 입력하고, (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 인원수를 입력한다.
6. '수검자 인원'은 학년별, 남·여별 검사인원수와 합계를 각각 입력한다.

제12조 삭제 <2020. 2. 13.>

제13조(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중 '등급별 분포 통계'란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전산처리프로그램에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각종 통계 자동산출기능 내장)

1. '검사인원수'란은 신체의 능력검사에 참여한 학생수를 학년별, 남·여별로 분류하여 총인원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2. '인원'란에는 신체의 능력검사에 참여한 학생건강기록부상의 신체의 능력등급이 동일한 학생수를 학년별, 남·여별로 분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한다.
3. '백분률<>'란은 제1호에 따른 검사인원수에서 각 급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측정하지 아니한다)까지 입력하되, "8.4"의 경우 "8.4"와 같이 표기한다.

②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생신체의 능력검사 통계표 중 '항목별 평균기록 통계'란의 자료입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왕복오래달리기'란에는 제1항제1호의 '검사인원수'에 대한 왕복오래달리기의 기록을 누계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50.2회"의 경우 "50.2"과 같이 표기한다.
2. '오래달리기걸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분·초 단위(초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분6초"의 경우 "6.06"과 같이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두자리를 갖추어 표기한다.
3. '스텝검사'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70.3점"의 경우 "70.3"과 같이 표기한다.
4.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3센티미터"의 경우 "9.3"과 같이 표기한다.
5. '종합유연성'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6.4점"의 경우 "6.4"과 같이 표기한다.

6.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9.1회" 실시한 경우 "9.1"와 같이 표기한다.
7. '윗몸말아올리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6회" 실시한 경우 "20.6"와 같이 표기한다.
8. '악력'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20.5킬로그램"의 경우 "20.5"와 같이 표기한다.
9. '50미터 달리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측정된 기록을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23초'의 경우 "8.23"와 같이 표기한다.
10. '제자리멀리뛰기'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89.3센티미터"의 경우 "89.3"와 같이 표기한다.
11. '체질량지수(BMI)'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3 kg/m<sup>2</sup>"의 경우 "18.3"과 같이 표기한다.
12. '체지방률'란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소수점이하 둘째자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까지 아라비아숫자로 입력하되, "18.5퍼센트"의 경우 "18.5"와 같이 표기한다.

## 제4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4조(자료의 보관) 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중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중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과 보조부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한다.

제15조(프로그램관리)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이나 파일의 구조 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활용 및 출력물관리) ①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에 따라 필요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요주의자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치료지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체의 능력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측정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공무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정비)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재·전·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 완료된 건강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18조(준용 등) 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업무에 있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② 학생건강기록부등의 전산처리 방법과 처리결과 확인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27호, 2020. 2. 13.>

이 훈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학 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 임 성 명

### 2. 감염병 예방접종

####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 핵						
일본뇌염						
수 두						
B형 간염						

####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3. 건강검사 실시현황

##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게(kg)												
비만도												

##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복오래달리기	회									
오래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초	공란							
	1,600m(중·고 / 남)	분:초	공란							
	1,200m(중·고 / 여)	분:초	공란							
스텝검사	PEI	공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회	공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약력	kg									
50m달리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지방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검진	검진일		공란			공란			
	검진기관		공란			공란			
구강검진	검진일								
	검진기관								

## 라. 별도검사 현황

검사일									
검사명									
검사기관									



【참고 자료 6】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 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 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 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 검사 및 진단 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 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7】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구분	내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참고 자료 8】

## 학생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 건강검진 관련 먼원이 발생할 경우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한 설명 및  
개선요청을 하고, 필요시 만족도 조사 실시:15쪽 참고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구강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	
1-2 ○○병원		3-1 ○○치과	✓
4-1 ○○병원		5-1 ○○치과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구강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 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 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본 만족도 조사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 자료 10】

##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분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등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쳐. 치쿤구니아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구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 학교장은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등교중지 관련 법령

### ◆ 학교보건법 제8조

제8조(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등교 중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98~101쪽 참고 [체육예술건강과-10770(2016.12.20.)]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의 제2항 및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제8조(출결상황)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 【별표8】 출결상황 관리 등

####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참고 자료 12】

## 등교 중지 기간 출석 인정 기안문(안)

○ ○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교 중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0학년 0반 0번 홍 길 동
질 병 명	수두
발생 인지일	20 . . .
등교 중지 기간 (출석인정 기간)	20 . . . ~ 20 . . . (일간)
등 교 일	20 . . .
제출 서류	진료 확인서(또는 의사 소견서나 의사 진단서)
나이스(NEIS) 출결 입력	수두로 인한 등교 중지

\* 참고 : 교육부 훈령 제169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제2항

○ ○ 학 교 장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20 . . .) 접수

(20 . . .)

우 000-000 (주 소)

/ <http://www.○○○.○○.kr>

전화 000-0000

전송 000-0000

/ 이메일

/ 공개구분

## 등교 중지 안내서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감염병(예시 : 수두)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어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 하오니, 뒷면 진료확인서에서 의사가 적시한 기간 동안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중지 기간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2.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이용과정에서 타 학생 감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정 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4. 완쾌 후 등교할 때는 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관계법령>

-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 제2항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 . . .

○ ○ 학 교 장

## 진료 확인서(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학생들의 질병관리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교 중지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소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 시어 적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진단(의심) 질환명 :
2. 발 병 일 :
3. 소견내용 :

위 환자는 상기질환으로 약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월 \_\_\_\_\_ 일까지의 (통원, 입원)치료를 요하 나, 증상의 호전정도에 따라 그 기간의 증감이 필요하고, 추후 위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의 관찰과 계속 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 참고자료 : 학교 빈발 감염병별 권장 등교 중지 기간

학교 빈발 감염병	권장 등교 중지 기간
급성 출혈성 결막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족구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각결막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전파방지를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 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발 행 일 : 20 . . . .

의 사 명 : \_\_\_\_\_ (인)

(※고무인 유효함)

○ ○ 학 교 장 귀하